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2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9(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29.(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담당과장	조웅환 과장(044-203-4020) 정규삼 과장 (044-200-5770)	담 당 자	하원석 사무관(044-203-4023) 박성우 사무관(044-200-5790)

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전용 품목코드 개발 등 선용품 전자상거래도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선용품 공급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내 선용품 산업 현황 ('15~'21년, 관세청) >

【선용품 거래금액 추이】



【선용품 거래건수 추이】



○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되었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 **(외항선)**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

○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2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 **(선용품 공급업체)** 무역협회에서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해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하여**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 현재 선용품 공급업체 공용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ShipWork.net 등을 운영 중

□ **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하원석 사무관(☎044-203-4023), 해양수산부 박성우 사무관(☎044-200-57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